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91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품 등록 후 성능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사후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도 정비(안 제32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성능검사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제조·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가 없어 저급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등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능검사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고, 사후검사는 3년마다 받도록 함

나.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감면 및 분할납부 제도의 도입(안 제36조)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납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점용료·사용료 감면하고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은 기술진단 등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라.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의 위탁 전문기관 지정(안 제42조제3항)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정함

마.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7)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별표 1(건설기술자의 범위) 개정('14.5.23 시행) 전에는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학력·경력자 모두를 인정하였으나, 개정 이후 역량지수를 평가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기술인력의 기준을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3.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6조제1항제3호 중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을”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2조제4항에서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하며, 그 검사대상은 별표 6과 같다.

1. 사전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제조·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2. 사후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등

록하여 제조·판매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지막 검사완료일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제3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경기침체, 대량실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 또는 특별한 이유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총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납부 기간: 1년 이내
2. 납부 횟수: 4회 이내

제41조제2항제9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별표 1의4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관로(펌프장은 소규모 펌프장만 포함한다) 기술진단전문기관
별표 1의5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 중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1의6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2호가목 중 “등으로”를 “재질로”로 하며, 같은 표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오수처리시설은 침전분리조를 2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8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을 직렬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사·스크린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7의3. 오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의 용적부하량은 0.3kg BOD/m³·일
이하로 한다.

1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같은 법 시행
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이 초급 이상인 경우
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별표 제
3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기술인력의 자격분야와 같은
종류인 경우로 한정하고,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이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분야가 환경이고 전문분야가 수질관리인 경우
로 한정한다.

별표 4 기술인력란 나목 중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를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로,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를 “기계설계기사”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같은 법 시행
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이 초급 이상인 경우
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별표 제
3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기술인력의 자격분야와 같은
종류인 경우로 한정하고,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이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분야가 환경이고 전문분야가 수질관리인 경우

로 한정한다.

별표 5 기술인력란 중 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란 가목(중전의 나목) 중 “화공산업기사”를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로, “1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중전의 다목) 중 “품질관리산업기사”를 “품질경영산업기사”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품질관리기사”를 “품질경영기사”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이 초급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별표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기술인력의 자격분야와 같은 종류인 경우로 한정하고,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이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분야가 환경이고 전문분야가 수질관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6의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검사대상란 중 “오수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 제조·판매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검사는 처리공법, 처리효율, 재질 및 구조가 동일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용량별 대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처리용량별 대표 오수처리시설 외의 오수처리시설의 성능검사는 서면으로 심사한다.

가. 1일 처리용량 5세제곱미터 미만 중 1개

나. 1일 처리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 10세제곱미터 미만 중 1개

다. 1일 처리용량 10세제곱미터 이상 50세제곱미터 미만 중 1개

라.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 중 1개

별표 7 비고 제4호바목 중 “등록을 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별표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기술인력의 자격분야와 같은 종류인 경우로 한정하고,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이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분야가 환경이고 전문분야가 수질관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이 초급 이상인 경우: 기술인력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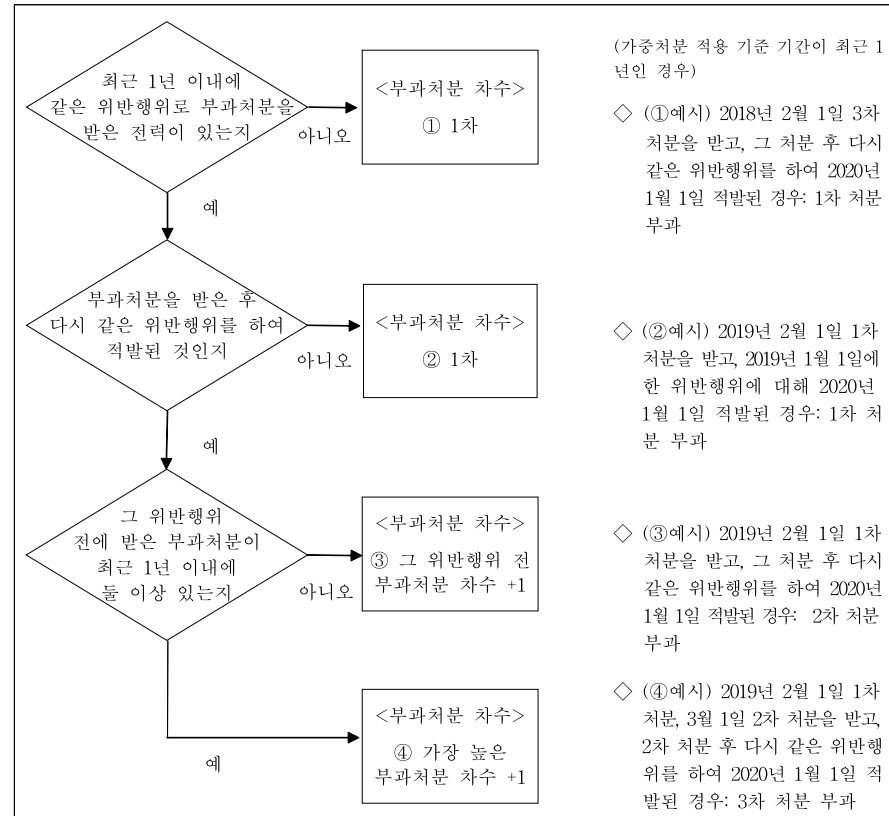
나.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이 중급 이상인 경우: 기술인력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

별표 8 제1호가목 전단 중 “2년간”을 “1년간”으로 하고, 제1호바목 중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을 “24시간 이동평균값 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위반행위란 타목부터 누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 및 타목1)부터 타

목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 제3호			
1)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및 처리용량이 50m³/일 이상 500m³/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150	200	250
2) 하수관로,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용량이 500m³/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300	400	500

별표 8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 마목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의 사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등록하여 제조·판매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후 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검사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기술진단 등) ① (생략)	제16조(기술진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보고한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u>한국환경공단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②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신설>	1. 한국환경공단
<신설>	2.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u>한국상하수도협회</u>
<신설>	3.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단전·단수로 인하여 <u>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u>	3. ----- <u>개인하수처리시설을</u> -----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제32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u>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이하 “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u> <u>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u> <u>검사를 말하며, 그 검사대상은</u> <u>별표 6과 같다.</u>	② 법 제52조제4항에서 <u>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검사로 하며, 그 검사대상은 별표 6과 같다.</u> 1. 사전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u>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제조·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u> <u>검사</u> 2. 사후검사: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u>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등록하여 제조·판매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마지막 검사완료일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u> <u>검사</u>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② (생략)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u>

	<u>조제1항에 따라 점용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경기침체, 대량실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 또는 특별한 이유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총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납부 기간: 1년 이내 2. 납부 횟수: 4회 이내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제41조(권한의 위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② ----- ----- -----

<신 설>

다. 1. ~ 8. (생략) 9. 법 제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나. (생략) <신 설> 다. (생략) 제42조(권한의 위탁) ①·② (생략) <신 설>	--. 1. ~ 8. (현행과 같음) 9.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 라. (현행 다목과 같음) 제42조(권한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활하수과	
연 락 처	(044) 201 - 7022